

영 등 포 구 의 회
제125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6. 12. 6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김 완 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 우리 구 자치법규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의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및 공포 등 단위 업무별로 구분·운영되고 있는 현행 조례를 통합하여, 일련의 입법 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 예고기간 규정 등을 규정 (안 제5조 내지 제11조)
-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2조 내지 제15조)
-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의 수 범위를 1/50 이상으로 정함 (안 제17조)

3.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하나로 합쳐 입법에 관한 일련의 입법절차가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의 연서 주민의 수는 2006년 1월 11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 규정에서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군·구의 경우 19세 이상 주민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조례청구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2005년 12월 31일 현재 영등포구의

19세 이상 주민총수는 323,467명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6,470명,
2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수는 16,174명이며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수는 7,800으로
청구인수 하향조정으로 인한 주민자치 참여가 확대되고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한 법 취지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 12. 6

보고자 : 김 완 섭

붙임 : 관련법령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 20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 또는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④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기간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완료된 경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폐폐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06.1.11>

⑩조례의 제정 및 폐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본조신설 1999.8.31]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연서 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6.29]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13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⑤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민감사청구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제출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⑥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⑦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구내용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⑧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1>

⑨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19세 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1.27, 2006.1.11> [본조신설 1999.8.31]